NEWSLETTER674
July 8, 2022

SEIN 세인관세법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8.1.시행)
- 발전용 LNG, 유연탄 탄력세율 인하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격 안정,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등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법령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을 인하하여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발전용 LNG, 유연탄 탄력세율 인하

-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KG당 10.2원
- 순발열량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 ㅇ 순발열량이 KG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 KG당 39.1원
  - ㅇ 순발열량이 KG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 KG당 41.6원
  - ㅇ 순발열량이 KG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 KG당 36.5원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 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4.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단서 신설〉**	가. ---------- 4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단서 신설〉**	나. ---------- 43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신 설〉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이면서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2. 적용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 제출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Email: kmkey8431@korea.kr
- 전화: 044-215-4331
- Fax: 044-215-8069

3. 제출기한

- 2022년 7월 8일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Contact

김승옥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